

## 4. 2.(화) ~ 5.(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 실시 = 선상투표기간(4. 2 ~ 5.)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선박 308척에서 2,050명 참여 예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가 4월 2(화)부터 5일(금)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08척의 선박에서 승선 중인 선거인 2,050명이 참여한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1대 국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 2,821명 중 2,586명이 투표하여 91.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기간(4. 2. ~ 5.)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상투표기간 시작 전인 4월 1일까지, 선장은 선상투표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진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쉘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하여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를 하였으나 선상투표개시일 전인 4. 1.(월)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4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쉴드팩스(Shield Fax) :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합·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팩시밀리

## 선상투표 쉴드팩스

**쉴드팩스로 선상투표선거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합니다.**

**\*쉴드팩스**



- 봉합기(내장)
- 적재함
- 선상투표지 수신용 봉합기(내장)

**제원 및 주요사양**

규격	910x820x1470mm (가로x세로x높이)
중량	약 110kg

**주요기능**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상투표지를 봉합하여 출력

**선상투표 진행절차**

- ① 선상투표신고
- ② 선박의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전송
- ③ 선원이 선상투표 후 선상투표지를 팩시밀리 전송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쉴드팩스에서 봉합하여 출력
- ④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송용봉투에 담아 구·시·군위원회에 송부
- ⑤ 선상투표지는 거소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

붙임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 안내 이미지

선상투표를 못 하고 귀국하셨다면...

## 귀국투표신고



### 신고대상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24. 4. 2.) 전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신고인

### 신고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 배부처

소속 선박회사,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상투표 홈페이지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서 다운 가능

#### 유의사항

-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함.
- 선상투표 신고인이 귀국투표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일(2024. 4. 10.)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사전투표 불가).